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요령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계재 목차

- 제1장 공사개요
- 제2장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 제3장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제4장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 제5장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계획
- 제6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제7장 안전교육계획
- 제8장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지난호에 이어>

여기에 소개되는 작성요령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함)』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작성실무를 추가하였다.

제 3장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이 장은 자체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안전점검 실시 계획 「안전점검실시계획」작성 및 「자체안전점검표」와 「정기안전점검표」 그리고 서식 「자체안전점검일지」와 「정기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확인 현황」을 첨부하여 작성한다.

3.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써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3.1.1 실시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3.1.2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 안전점검시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항목은 별지 제19호 서식 「자체안전점검일지」(자체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며,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서는 추후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현장별 특이 공정 또는 자체적으로 작성된 자체점검표 양식이 있을 때는 협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1.3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체 안전점검일지(표4 참조)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익일 자체 안전점검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여기에 공종별 자체안전점검표를 첨부)

표1. 가설공사 자체안전점검표

구분	점검 사항	점검 조처 결과	사항
1 가 설 관 비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관 및 부속철물은 KS규격에 합당한 것인가 • 강관은 외력에 의한 균열, 뒤틀림 등의 변형 및 부식은 없는가 • 각부에는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고 밑돌잡이를 설치하였는가 • 비계기둥 간격은 보방향 1.5~1.8m, 간사이 방향 1.5m 이하로 하였는가 •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였는가 • 띠장 및 장선은 1.5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였는가 • 비계기둥의 최고부터 3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은 2분의 강관으로 묶어 세웠는가 • 구조재와 수직·수평으로 5m 이내마다 견고히 연결하였는가 • 기둥 간격 10m 마다 45° 각도의 처마 방향 가새를 설치하였으며, 가새에 접속되지 않은 기둥은 없는가 • 지주, 띠장, 수평재, 가새 등의 접합은 전용 철물(너트, 보울트 등)을 사용하였는가 • 지주재 띠장의 이음은 동일 직선 상에 오지 않도록 하였는가 • 벽이음 이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10m 이내로 하였는가 • 작업발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줄비계로 하였는가 • 다음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발판의 손상이나 위험하게 들출된 곳은 없는가 - 지주, 수평재 띠장의 긴결 상태가 이원된 곳은 없는가 - 벽이음이 연결대가 풀어진 곳은 없는가 - 지주가 침하하였거나, 미끄러진 곳은 없는가 		

32 정기 안전 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건설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써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32.1 정기 안전 점검의 의뢰

정기 안전 점검의 의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 안전 점검 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

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2.2 정기 안전 점검 점검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 안전 점검 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정기 안전 점검 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점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3.2.3 정기 안전 점검 시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요 공종별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실시되 점검 빈도 및 시기는 시공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가설 공사

비계, 가설도로, 가설올타리 등 가설 구조물의 설치 완료 후

(2) 굴착 공사 및 발파 공사, 성토 및 절토 공사

굴착 공사 시공 중 또는 지반의 함수율이 급격히 변했을 때

(3) 콘크리트 공사

주요 구조부마다 최종 양생 완료 직후 (매몰부위는 매몰 직전)

(4) 강구조물 공사

강구조물 설치 또는 조립 완료 직후

3.2.4 정기 안전 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 안전 점검 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4항 및 제46조의 5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 건설공사 인가, 허가, 승인한 기관 및 시공자에게 안전 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한다.

건설 관련 실무

- (1)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별지 제20호 서식, 표5 참조)
- (2)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여기에 공종별 정기안전점검표를 첨부)

표2. 콘크리트공사 정기 안전점검표

구분	점검 사항	점검 조치 결과 사항
1 거 푸 집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위별 거푸집의 조립도 작성 여부 • 거푸집의 재질 및 상태 • 부위별 거푸집 사용 횟수의 적정성 •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 상태 • 박리제 도포 상태 • 거푸집의 존치기간 준수 여부 •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 부상방지 조치 • 개구부 등의 정확한 위치 • 거푸집 하부 및 모서리 등의 조립 상태 	
2 철 근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제작 도면의 작성 여부 • 철근이음 및 이음 위치의 적정성 • 철근 정착길이 및 방법의 적정성 • 철근의 배근 간격 • 철근 교차부위의 결속 상태 • 간격재(spacer)의 재질과 설치 간격 • 신축이음부위, 지하층의 배근 방법 및 상태 	
3 콘 크 리 트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타설 속도와 방법 • Slump Test의 유무 • 골재 분리 및 균열의 발생 여부 • 콘크리트 다짐 상태 • 콘크리트 타설 전 청소 상태 • 이어치기 위치 및 방법의 적정성 • 콘크리트 양생시 보호 조치 • 구조물에 매설되는 배관의 위치 및 피복 두께 	
4 거 푸 집 지 보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의 강도 조사 • 지보공의 재질 및 상태 • 지보공의 이음부, 접속부, 교차부 연결 및 고정 상태 • 지보공 설치 간격의 적정성 • 경사면에서의 지보공 수직도와 Base Plate 정착 상태 • 정차면의 정착 상태 • 파이프 지보공 연결시 전용 철물 사용 여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제3호에 의하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3.3.1 정밀 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3.2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3.3.3 정밀 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 (2) 결함 원인 분석
- (3) 구조안전 여부
-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

3.4 안전점검 실시계획

여기에는 표3과 같이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계획에 대해 공정표 상에서 적절한 실시 시기를 판단하여 정정을 잡아 놓는다.

© 작성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860-7028 회원홍보실 오영수,
02-860-7131 건설안전국 유중현

